

의안번호	2207871
의 퇴 인	이원택 의원
회 답 일	2025.5.14.
추 계 번 호	25B061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보조 비율 가정에 따라 2026년 171억원~571억원, 2030년 227억원~756억원 등 향후 5년간(2026~2030년) 총 990억원~3,299억원(연평균 198억원~660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1 (30% 보조)	171	184	197	211	227	990	198
	시나리오2 (50% 보조)	285	306	328	352	378	1,650	330
	시나리오3 (100% 보조)	571	612	656	704	756	3,299	660

주: 1.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아닌 다른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한 결과로 이를 고려할 경우 추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2. 본 추계서는 가용 자료의 한계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과 월 평균 근로시간을 준용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과 월평균 근로시간의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의2(저임금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조의2(저임금의 보조)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최저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최저임금법」 제7조²⁾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³⁾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은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최저임금상승률

(2025.4. 기준, 단위: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최저임금상승률	1.7	3.9	3.8	3.8	3.8	3.8

- 2)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곤란하며, 본 추계서는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한 보조 비율을 시나리오로 나누어 산출

- 개정안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사업대상자 수에 지원단가와 근로시간 및 근로기간을 모두 곱하여 산출
- (사업대상자 수) 2024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수를 토대로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평균 증가율을 준용하여 산출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15,022명으로 이 중 9,189명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음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았으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외의 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고려하지 않음

[표 2]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수 추이

(단위: 명,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근로자	12,712	13,600	14,228	14,570	15,022	4.26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	8,016	8,393	8,741	8,975	9,189	3.47

주: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 작성한 내용임

자료: 보건복지부

- 추계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장애인 근로자의 수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장애인 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3.47%)을 토대로 산출

[표 3]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수(추정치): 2026~2030년

(단위: 명)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	9,838	10,180	10,534	10,899	11,27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원단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 간의 차액을 산출

- (평균 시급) 추계기간 동안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2024년 기준 평균 시급에 최근 5년간(2020~2024) 연평균 증가율을 준용하여 산출
- 본 추계서는 가용 자료의 한계로 인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을 준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표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 추이

(단위: 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 포함)	4,903	5,038	5,447	5,644	5,705	3.86

주: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자료를 취합 작성한 내용임
자료: 보건복지부

- (최저임금) 추계기간 동안 최저임금은 2025년 기준 법정 최저시간급이 NABO의 최저임금상승률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표 5] 법정 최저시간급 및 저임금 장애인 평균 시급(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천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법정 최저시간급(A)	10.4	10.8	11.2	11.6	12.1
저임금 장애인 평균 시급(B)	6.2	6.4	6.6	6.9	7.2
차액(A-B)	4.3	4.4	4.6	4.7	4.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근로시간) 추계기간 동안 월평균 근로시간은 최근 5년간(2020~2024) 평균값(113시간)을 준용하여 산출
 - 본 추계서는 가용 자료의 한계로 인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준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표 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 포함)	106	106	119	118	118	113

주: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자료를 취합 작성한 내용임
자료: 보건복지부

- (근로기간)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장애인 근로자의 특성상 12개월 근로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의 수에 법정 최저시간급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 간 차액과 근로시간 및 근로기간을 모두 곱하여 산출

[표 7] 법정 최저시간급 및 저임금 장애인 평균 시급(추정치): 2026~2030년

(단위: 명, 천원, 시간, 월)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	9,838	10,180	10,534	10,899	11,278
보조단가(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	4.3	4.4	4.6	4.7	4.9
월평균 근로시간	113	113	113	113	113
근로기간	12	12	12	12	12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0%, 50%, 100%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구성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보조 비율 가정에 따라 향후 5년간 (2026~2030년) 총 990억원~3,299억원(연평균 198억원~660억원)으로 추계됨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추가 재정 소요	시나리오1 (30% 보조)	171	184	197	211	227	990	198
	시나리오2 (50% 보조)	285	306	328	352	378	1,650	330
	시나리오3 (100% 보조)	571	612	656	704	756	3,299	660

주: 1.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아닌 다른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한 결과로 이를 고려할 경우 추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2. 본 추계서는 가용 자료의 한계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과 월 평균 근로시간을 준용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과 월 평균 근로시간의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assembly.go.kr